

搜查構造改革 가시적 성과 期待

- 國會의 신속한 論議 再開 · 정부 조정안 導出 촉구 -

지난해 활기를 띠었던 경찰 수사구조 개혁문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뚜렷한 물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이 이 문제에 대해 내실을 기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보호와 불편해소, 사법서비스 편의증진 차원에서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가 반드시 미무리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의 수사구조개혁 추진 경과

현재 한국의 수사구조는 일제강점기 군국주의 시대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검사 독점적 수사권력에 의한 폐해가 커지면서 경찰 수사권 문제가 점차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02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경찰 수사권 독립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까지 체택한바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 검사의 사법경찰관 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바꾸는 경우에는 형소법 제 195, 6조 개정이 필요하고 ▶ 사법경찰관의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12조 제3항 개정(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과 형소법의 체포 및 구속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 警·檢 자체 조정 노력

警·檢은 지난 2004년 9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수사권조정 협의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 공청회(05.4.11)도 개최하였으나 본질적 문제인 수사주체성과 지휘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國會

국회에서는 이인기·홍미영 의원이 경찰입장과 유사한 법안을 각 대표발의(05.6월)한후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05.9.13)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에서도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을 설치(05.6.22), 자체 조정안 발표(05.12.5)한 바가 있으며, 이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검찰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대표발의(05.12.22), 이 법안 또한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3) 政府

한편 정부에서는 여당에서 마련(05.12.5)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자,

총리 주관으로 실무토론회 개최(06.1) 및 경찰청장·검찰총장 의견을 각각 청취(06.1.31/2.1)하는 등 정부조정안 마련을 시도 했으나, 총리 교체에 따라 처음 제시되었던 일정(3월 조정안 마련, 4월 국회 제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警·檢의 입장

1) 경찰

경찰은 검사의 수사권 독점체제 개선과 경



◆ 사진은 최근 경찰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장면.

- 검사의 수사권 독점체제 개선, 경찰 수사주체성 명문화
- 警·檢 상명하복관계를 상호협력의무로 전환
- 인권보호 및 경찰수사 권한 남용방지 위한 검사 통제 보장

찰의 수사주체성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다. 즉, 수사 주체성 명문화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이 없는 법의 흡결과 법과 현실의 괴리를 치유하는 것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와 별개의 문제로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둘째, 警·檢간 상명하복관계를 상호협력의 무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경찰관서가 명백한 독립기관으로 타기관의 조치권을 포함적 명령복종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민주적 정부조직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검찰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형사사법개혁의 출발점으로서 반드시 혁신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대통령 정책공약 내용에 충실히 '분권과 자율' '경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 검사의 일반적·포괄적 명령·복종 관계를 상호협력의무 관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인권보호와 경찰수사의 권한 남용방지를 위한 검사의 통제는 보장한다는 것이다.

검사는 직접 수사권,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일반적 기준 재정권, 송치후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받는 등 경찰수사에 대한 엄격한 사후 통제장치는 충분히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2) 檢 察

이에 반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 협의체」(04.9.15~12월) 및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04.12.20~'05.5.2) 협의 과정에서 경찰권 비대화, 인권침해 우려, 검사제도의 본질상 경찰 수사주체성 인정과 상호협력 관계 설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의 민생침해범죄 수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완화하여 경찰 수사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행 법률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조정안 발표(05.12.5) 이후, 당초 형소법 개정不可 입장에서 경찰에 유리한 개정안 제시·관철로 입장을 전환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지휘 전제하 "개시·진행권 부여, 예외적으로 극히 제한적 민생범죄 독자수사 인정, 다만 통제는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리한 개정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경우에도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범죄 발생보고 의무, 송치명령, 징계소추권 및 검사의 수사사무 접경·지도 권한 부여 등 통제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경찰의 추진 방향

수사구조개혁은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경찰청은 향후 정부조정안 도출 및 국회 논의의 조기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 목적이 인권보호에 있음을 직시, 「인권수호위원회」「시민감사위원회」 등 음부즈만제도 활성화를 통해 실효적 인권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진술녹화제」 확대, 서면수사지휘 의무화 등을 통해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고 「수사경과제」 '죄종별 수사팀제' 범죄분석요원 특채, 수사지식 공유 D/B 확충 등 수사의 전문성 확보 및 과학수사 역량을 확충하는 등 경찰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국 前 치안감, 「수필 6.25 今昔之感」펴내 - ②



김재국 前 치안감이 「수필 6.25 今昔之感」이란 책자를 펴냈다.

『8.15 해방 후 서울에 정착하면서 죽을 때까지 생활을 그려 보리라 생각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6.25를 맞이하여 서울을 후퇴할 때에 내 개인의 기록이 공산당 손에 들어가면 혹시 전류하는 가족을 신상에 불리한 결과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모두 불태워 버렸다』는 김 前 치안감.

그는 『후퇴를 계획하며 서로에게 쓰기 시작하여 모아 놓았던 것을 지금 활자로 비기기로 했다.』면서 『나의 젊은 시절의 이상과 고민과 절규를 담은 한 품의 그림으로 후세들에게 주고 싶다.』고 밝혔다.

本誌는 紙面관계상 김 前 치안감의 수필집을 全載할 수가 없어 日記 부분만 중간 생략을 병행해 2회에 걸쳐 게재하되 최대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충실히 나타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 지지부진(遲遲不進)이라고 한다. 그러나 웃어다니며 아무(阿附)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내 뜻대로 가련다.

1월 19일 수요일 맑음

집이 그립고 가족들이 보고 싶다. 오늘은 내 운명이 비참한 것만 같다.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나를 따라 38선을 넘고 6.25전선을 피하며 하늘처럼 의지하고 있는 내 어머니와 아내와 세 자식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 나는 하숙비도 못내어 자취 밖에 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 속에 있다. 이대로 좋을 수는 없는 갈등이 생긴다. 손등은

사정이 같 수가 없다. 경제적 토대가 없는 자신의 처세에 심란(心亂)하다. 박 경사가 날더러 돈 좀 벌수도 있지 않느냐고 한다. (기밀 통신 기재구입에 다소 수입을 도모할 수도 있다.)

세상 현실은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가 아닌 길을 전체가 썩는다고 나마자 가담해서는 안 되겠다. 도산 선생은 노국(露國)에서 혁명자금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했다. 또한 조만식 선생은 조민당이 남으로 망명할 때 아무리 곤궁해도 박O의 자금은 쓰지 말라고 하셨다 한다. 도(道)가 아니면 가지를

“강원국에 착임(着任)하여 사찰과 배치를 받다

정의와 민족을 위해,

大를 위해 小를 희생하는 과감성을 발휘하자”

았다. 아마도 나의 숙명인가 보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고 하셨는데...

1월 5일 수요일 맑음

아침엔 제법 눈발이라도 내릴 듯 이 흐린 하늘에 흰 눈송이가 부슬대더니 어느덧 햇살에 녹아버리고 말았다. 부산의 겨울은 정말 승승 같은 맛이 난다고나 할까.

연두 시무식에서 창의 노력하라는 치안국장 훈시를 전달받았다. 실민심(失民心)하면 실천하(失天下)라는 명심보감을 생각하며 이대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색안경의 비유를 들어 죄의 절대적 가치관을 풀이했다.

요한복음에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문죄(問罪) 할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도 연상했다.

1월 7일 금요일 맑음

석간에 해경대가 해무청(海務廳)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기사가 났다. 모두들 뒤숭숭하다. 세파로 보아서는 이 기회에 경찰을 떠나고도 싶지만 다년간 정든 직장이며 당초 이 길로 임신할 목표를 세운 이상 그리 간단하게 단념하고 싶지도 않다.

축생(소리)은 소극적이어서 인생

자취 덕분에 얼어 터져서 「맨소례답」을 발랐으나 이상(想像)의 상처는 무엇으로 빌리야 극복할 수 있을까? 공무원은 뜻난이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참 “나”가 아닌가? 나는 초인과 같이 가족 침식(寢食) 이런 신변사에 구애(拘碍)하지 않으리라고 자부하지 않았나? 더 큰 “나” 속에 생을 발견하자. 국가, 민족,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위해 적은 “나”를 잊자.

2월 3일 목요일 흐림

집 소식이 궁금한데 오늘은 아무 편지가 없다. 밤에 부산극장에서 “마의태자(麻衣太子)”를 구경하다.

망국의 비애를 느끼며 눈물 흘리다. 마의태자와 같은 충렬도 있었으나 국왕의 우동(愚蒙)한 탐색으로 신라 천년의 사직을 멸망시키다. 망국하는 공식은 탐색과 향락과 간신과 우동(愚蒙)한군주.

민족은 병들고 강산은 헐벗고 병자는 굽주려 빼만 남고 의인의 눈에는 눈물마저 밀라버린 신라의 말로! 슬프다.

2월 5일 토요일 맑음

집에서 편지가 왔다. 종일이 진학문제로 상경하기를 원한다. 직장

맡고 의(義)가 아니면 행치를 맡자! 백설이 만건곤할 새 독야청(獨夜淸) 하리라. 힘을 기르자.

2월 8일 월요일 맑음

저녁 숙식을 하다 야간무전으로 강원도 전출발령이 났다. 해경 전선 기합이 오늘 저녁 5시로 미감을 한다고 하여 마음이 착잡(錯雜) 하던 중 결단의 보(報)가 도착하였다. 연희 흥이 잔류(殘留)하게 되어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길이 다시 심기 일전(心機一轉)으로 출발을 하자 이하영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2월 22일 화요일 맑은 후 흐림

강원국에 착임(着任)하여 사찰과 배치를 받다. 규모를 좀 더 크게 갖고 일도행정(一道行政)이나마 참여하는 기분으로 민정사찰활동을 하리라. 정의와 민족을 위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과감성을 발휘하자.

* 이하 筆者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적은 「歲暮有悔 -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時論 민족의 관심사」, 「한국전쟁, 김일성과 스탈린의 음모」 부분은 紙面 부록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끝)

「警友會史」編纂資料 蔦集

경우회 창설시부터 2006. 11. 21 경우의 날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경우회사」 편찬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및 후배 회원님들 가운데 경우회에 관련된 자료(사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께서는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藏集期間 및 編集
○ 수집기간 : 2006. 6 ~ 2006. 9
○ 편찬 : 2006. 11.

◇ 藏集資料 範圍
○ 경우회 창설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우회의 발자취와 관련자료
○ 창설 이후 우리 경우와 국민이 잊어서는 안될 인물과 관련자료
○ 경우회 주요 행사와 업무실적처리 과정에서 후배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관련자료

◇ 藏集資料의 類型과 對象
○ 문건 및 서적류
• 임명장, 발령장, 사령장, 추대장, 위촉장, 회원명부·조직관련 서류, 복지관련 서류, 행사관련 서류, 활동실적 관련서류, 대회관련 서류, 표어, 성명서, 신년사, 송년사, 주도사, 격려사, 취임사, 결의문, 신문, 잡지, 포스터, 경우신조, 설립 취지문, 표창장 문구, 감사장 문구, 공보장 문구 등
○ 주요 실적 및 수기류
• 각종 주요 행사 실적과 활동실적
• 업무일지, 수기, 비밀록 등 수기류
○ 사진류 및 음반류
• 창설 이후 경우회 실상이 담겨진 기록사진 등

• 각종 행사, 총회, 의사회, 규탄대회 녹음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 음반류
○ 서화류
• 경우회 주관 전시회에 출품한 그림, 글씨(서예), 휘호 등 서화류

◇ 藏集方法
○ 경우회원 개인소장 자료는 경우회 중앙회 흥보처(경우회 편찬위원회)에 우송 또는

직접제출
○ 시도회 또는 지역회에 제출

◇ 接受處
○ (우)100-82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경우회사」 편찬위원회

○ 전화 : (02)2234-1881, (02)2231-2143~5 / 경비 8-3345

○ FAX : (02)2231-7557, (02)2231-2442 / 경비 8-3339

◇ 資